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820
○ 제 안 자 : 김소영 의원 외 11명(찬성의원 10명)
○ 제 안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을 행사하므로 결과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현재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5인 이하의 소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권고까지 시행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 바, 자칫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분리함(안 제18조).

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명시함(안 제19조).

다.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직무 기능을 명시함 (안 제20조).

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등 운영사항을 명시함 (안 제21조).

마.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사항을 시장의 책임으로 지정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가인권위원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1. 10. 25. ~ 11. 1.) 결과

※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다수가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임.

※ 반대의견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으나, 찬성의견은 구체적인 사유없이 찬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입법예고결과 주요 의견요약서	
조 문(개정안)	주 요 의 견
찬성 주요 의견 (781)	- 인권보호관은 조사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 조사권과 결정권이 구별되어야 조사관의 선입견과 독단을 막을 수 있으며, 누구든 자기가 조사한 것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 조사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는 것은 독단적인 행태를 방지할수 있음. - 현재 상임인권보호관들이 조사와 의결까지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상임인권보호관들이 조사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상임인권보호관들은 조사업무만 담당하여야 하며, 의결권과 시정권고는 또 다른 곳에서 맡아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음.
반대 주요 의견 (49건)	-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분리의 명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조사와 판단의 분리 여부는 기구의 성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며, 분리가 안되었다고 무조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현행 구제위원회의 형식이 인권보호관이 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인권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없이 인권보호관 제도가 시민인권보호관-인권구제위원회 옥상옥화 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움. - 조사 따로 의결 따로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에서 이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반대함. - 조사관업무와 위원회의결은 상호 보완·협의로 피해자가 없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원화하면 위원의 성향이나 탁상공론으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봄. -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하여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불가 - 시민인권보호관이 단독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상임보호관과 비상임보호관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됨에도 이전의 인권구제조직 발전의 방향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은 무리한 개정으로 보임.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성되고 운영중인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시민인권보호관이 소수여서 문제가 된다면 그 수를 늘려 더욱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도모해야지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것 - 조사를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이의 개입이나 그에 따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두번의 아픔을 줄 수 있으며, 인권옴부즈만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도 커져 분리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할 수 없을 것임.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11.18 접수)**〕

개정조례안의 시의회 심의 유예 및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 당부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 4. 인권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안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0. 이하 “개정조례안”이라 합니다.)의 심의를 잠시 유예하고 서울시의 인권 옹호 체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

① 인권침해구제기구의 설립취지인 인권옴부즈만 체제 폐지의 본질적 변화 야기

- **당초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권고 기능 중심**으로 구조 설계
- 현 체제도 의사결정 방식은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변경되었지만 조사와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는 **옴부즈만 기능 유지**하는 준 합의제 행정기관
- 또한, 권한의 집중 강화를 통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가능

② 인권침해구제 기능 약화 및 독립성 저해

- 위원들을 모두 비상임으로 구성시 **업무의 집중성, 전문성 약화**
- 회의소집, 안건상정 등 조사결과 처리과정의 주도권이 상임보호관에서 인권담당관으로 변경되면서 **조사와 권고의 연계성 약화로 독립성 저해**

③ 인권기구의 변경은 현재의 요구와 시민적 수요를 종합·체계적 고려 필요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안」**('21.6.30 입법예고) **통과 후 추진**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조치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고(안 제18조), 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19조)와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직무 기능을 추가하여(안 제20조), 구제위원회 운영사항(안 제21조) 및 시정권고와 후속조치사항을 지정(안 제24조)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 '12.9.28 - 시민인권보호관 설치(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구성, 독임제 운영)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 '16.9.29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상임시민인권보호관과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 구성, 독입제 → 합의제 변경)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현황(상임/비상임)〕

연번	성명	현직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1	전00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
2	김00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
3	노00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4	위00 (위원장)	변호사
5	김00	변호사
6	김00	교수
7	손00	00이사장
8	이00	변호사
9	이000	여성단체 임원
10	최00	연구원

○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분리를 통해 인권보호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여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조례개정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①상임보호관		▸조사+**의결** ▸직권조사 ▸각하사건 예외적 조사 ▸임시회 소집권 ▸외부 조사전문가 선임	⇒	▸**조사** ▸**직권조사** (구제위 의결 필요)
②구제위원회	구성	▸**상임보호관**(임기제공무원) ▸비상임보호관(외부위원)		▸**비상임보호관**(외부위원)
	기능	▸**조사** + 의결, 시정권고		▸**의결, 시정권고**
	보궐위원 임기	-		▸**새로 시작**
	위원장 대행	-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 또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권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분리시켜 조사권과 결정권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를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이의 개입이나 그에 따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찬반 의견이 공존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이 있었는 바, 이를 감안한 숙의과정과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시 총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다수가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임.

입법예고결과 주요 의견요약서	
조 문(개정안)	주 요 의 견
찬성 주요 의견 (781)	- 인권보호관은 조사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 조사권과 결정권이 구별되어야 조사관의 선입견과 독단을 막을 수 있으며, 누구든 자기가 조사한 것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 - 조사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는것은 독단적인 행태를 방지할수 있음. - 현재 상임인권보호관들이 조사와 의결까지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상임인권보호관들이 조사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상임인권보호관들은 조사업무만 담당하여야 하며, 의결권과 시정권고는 또 다른 곳에서 맡아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음.
반대 주요 의견 (49건)	-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분리의 명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조사와 판단의 분리 여부는 기구의 성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며, 분리가 안되었다고 무조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 현행 구제위원회의 형식이 인권보호관이 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분리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인권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없이 인권보호관 제도가 시민인권보호관-인권구제위원회 옥상옥화 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움. - 조사 따로 의결 따로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며, 다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에서 이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반대함. - 조사관업무와 위원회의결은 상호 보완·협의로 피해자가 없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원화하면 위원의 성향이나 탁상공론으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봄. -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하여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한다는 것은 이해불가 - 시민인권보호관이 단독으로 조사하여 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상임보호관과 비상임보호관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조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됨에도 이전의 인권구제조직 발전의 방향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은 무리한 개정으로 보임.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구성되고 운영중인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시민인권보호관이 소수여서 문제가 된다면 그 수를 늘려 더욱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도모해야지 권한을 축소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것

	- 조사를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이의 개입이나 그에 따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두번의 아픔을 줄 수 있으며, 인권옴부즈만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도 커져 분리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할 수 없을 것임.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11.18 접수)〕

개정조례안의 시의회 심의 유예 및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 당부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 4. 인권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안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0. 이하 “개정조례안”이라 합니다.)의 심의를 잠시 유예하고 서울시의 인권 옹호 체제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음.

① 인권침해구제기구의 설립취지인 인권옴부즈만 체제 폐지의 본질적 변화 야기

– **당초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권고 기능 중심**으로 구조 설계

– 현 체제도 의사결정 방식은 독임제에서 합의제로 변경되었지만 조사와 의결권을 모두 행사하는 **옴부즈만 기능 유지**하는 준 합의제 행정기관

– 또한, 권한의 집중 강화를 통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가능

② 인권침해구제 기능 약화 및 독립성 저해

– 위원들을 모두 비상임으로 구성시 **업무의 집중성, 전문성 약화**

– 회의소집, 안건상정 등 조사결과 처리과정의 주도권이 상임보호관에서 인권담당관으로 변경되면서 **조사와 권고의 연계성 약화로 독립성 저해**

③ 인권기구의 변경은 현재의 요구와 시민적 수요를 종합·체계적 고려 필요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안」**('21.6.30 입법예고) **통과 후 추진**하는 것이 입법의 경제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조치

나. 세부 내용 검토

1)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분리(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를 분리하고, 인권보호관 임용 및 운영 사항과 구제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
②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 및 운영한다.
③ 상임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하되, 관련 분야 실무경력 고려 시 비영리	③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민간단체 등 활동 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비상임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 4. (생 략) ⑤ 구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보호관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④ 구제위원회 위원---------- ----------. 1. ~ 4. (현행과 같음) ⑤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⑥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동 개정안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에 참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기능을 이원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비상임위원(7명)과 상임위원(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은 임기제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여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음.

○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권과 결정권을 구분하여 조사관의 선입견과 독단을 막을 수 있으며, 누구든 자기가 조사한 사항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구제위원회 운영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결 결과에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나,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분리로 옥상옥화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분리 여부는 기구의 성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주요활동 현황〕

〈 2021.9.30. 기준 , 병합포함〉

구분	사건 접수	처리 현황					
		권고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 중지
총계	346	87 (병합9건 포함)	50 (병합5건 포함)	128 (병합4건 포함)	60	18	3
‘21	83	19 (병합1건 포함)	15	34 (병합2건 포함)	9	4	2
’20	138	36 (병합5건 포함)	19 (병합4건 포함)	49 (병합1건 포함)	28	5	1
’19	125	32 (병합3건 포함)	16 (병합1건 포함)	45 (병합1건 포함)	23	9	.

출처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74쪽.

○ 또한, 구제위원회 위원구성을 외부위원만으로 구성할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토의를 통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뢰성 확보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의 정확한 이해 및 조정 저하의 단점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와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구제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과 전문위원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은 5개 분야 (상임위원회 · 침해구제위원회 · 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아동권리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연구와 검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보고의 직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 상임보호관(지방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법 적용」)은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사권과 구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구성 및 임기 비교〕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설치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구 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포함 11명 -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인권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포함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위촉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
임 기	- 국가인권위원회 : 3년(1회 연임 가능)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 2년(연임가능) ※ 전문위원은 연구검토를 업무 수행	- 인권위원회 : 3년(1회 연임 가능)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상임보호관→임기제공무원, 비상임보호관→2년(1회 연임 가능)
자 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 4급이상 공무원(당연직)
직 무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권고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직무 명시(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구제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비상임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제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상임 보호관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9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 동 개정안은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분리에 따른 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불가시 위원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고,

-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한 입법례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법제처, 「법령인안심사기준」, 384페이지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공동위원장 등)

④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3)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기능(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조문의 제명을 “직무”에서 “기능”으로 변경하고, 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여 인권보호관의 조사 범위와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직무)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① 인권보호관은 ---------- ---------- ---------- ---------- ---------- 조사한다. 다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조사는 상임 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한다.	〈삭 제〉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권보호관은 ---------- ---------- ---------- 조사할 수 없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에 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시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구제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삭 제〉

○ 안 제20조에서는 구제위원회로 통합되어 있던 직무를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와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능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인권보호관은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권고기능을 삭제하고,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인권보호관이 조사에 집중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인권보호관의 권고 권한 제한과 구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기능 축소와 역할 저하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구제위원회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며, 인권보호관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열거된 사항중 인권보호관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예외적 조항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직무) ③ 구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각하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상임 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이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제1항에 규정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구제위원회가 기각한 신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7.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 사항 명시(안 제21조)

○ 안 제21조는 구제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 의결과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운영)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제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밖에 구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동 개정안은 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절차와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구제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명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제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한 위원의 숫자가 적정한지 여부와 구제위원회 위원 총수를 감안한 요구인원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내역〕

- (2018년) 정례회 12회, 임시회 2회, - (2019년) 정례회 12회, 임시회 7회

- (2020년) 정례회 12회, 임시회 5회,- (2021년) 정례회 9회, 임시회 2회(2021.10월 기준)

5) 인권보호관 및 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 범위 확대(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에 배우자 등 특정한 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때 조사 및 결정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보호관의 제척 등) **시민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결정에서 제척된다.	**제22조(인권보호관 및 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인권보호관 및 위원**----------.
1. **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인권보호관 및 위원**----------
2. **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인권보호관 및 위원**----------
3.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인권보호관 및 위원**----------
4.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인권보호관 및 위원**----------
5. **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5. **인권보호관 및 위원**----------

○ 동 개정안은 제척사유가 있는 인권보호관과 위원은 제척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제척 결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회의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하여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 운영과 중립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규정에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과 해촉 사유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를 종합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제척 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바, 당사자가 제척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척신청이 아니라 제척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 또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가 할 것인지, 위원장이 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권한을 가지므로 기피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운영 기준 및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

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있다**.
② **구제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2개월** ----------.
⑤ **구제위원회는**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 동 개정안은 구제위원회의 권고와 의결 내용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하고 후속조치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제위원회 권고 및 의결 사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과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이동이 있는 바, 이로 인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보완 및 명확한 조문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 안 제21조 제2항에서는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다. 종합 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임.

- 또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3인으로 구성운영 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 시행 및 권고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 이의 분리를 통해 직무의 기능과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려는 것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분리시켜 조사권과 결정권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를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이해가 낮아질 수 있고 다른 개입이나 그에 따른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이 있었는 바, 이를 감안한 숙의과정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